

선거운영세칙

제 1 조

본 세칙은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운영세칙을 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집행 관리하에 그 목적을 둔다.

제 2 조 근거 및 선거실시

1 항, 본 재미국대한체육회정관 제()조 (본부조직 임원선출 및 임명) 1 항 제()조(임원피임자격) 제()조(선거)에 근거하여 제()조로(규정 및 세칙)에 의해 선거운영세칙을 제정한다.

2 항, 현 회장 임기 종료 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한다.

3 항, 회장이 1 년 이상이 남았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 보궐선거의 경우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나 모든 절차는 선거총회와 같이 한다.

제 3 조 선거관리

본 선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준을 하되 본조항에 명시한 일시는 변경할 수 없다.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득해야 가능하다.

-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| 정기총회 60 일 이전 |
| 2. 선거공고(공문 및 광고) | 정기총회 45 일 이전 |
| 3. 입후보자 등록서류 배부 | 선거총회 30 일 이전부터 마감일까지 |
| 4. 입후보자 등록접수 | 3 일간(선거일 기준 14 일 이전까지) |
| 5. 회장후보자 확정 | 후보자 접수마감 24 시간 이내에 |
| 6. 후보자 기호결정 | 접수순서대로 |
| 7. 후보자 및 선거권자 공개 | 후보자 확정 즉시 |
| 8. 선거실시 | 정기대의원 총회 직후 선거총회에서 |
| 9. 당선자확정 및 당선선포 | 개표집계직후 |
| 10. 당선증 수여 | 회장당선 확정 직후 |
| 11. 회장 당선공고 | 당선확정 7 일 이내 |
| 12. 선거관리위원회 결산 | 총회종료 14 일 이전 |

13. 선거관리위원회 해체

제 4 조 선거관리위원회

1 항, 명칭은 제 00 대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 라고 칭한다.

2 항, 선거관리위원회 구성

가) 위원장은 선거총회 예정일 60 일 이전에 이사회의 동의로 임명한다.

나)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에서 추천을 통해 임명한다.

다) 선거관리위원장 1 인 부위원장 1 인 재무위원 1 인으로 총 5 인 이내로 한다.

라) 선거관리위원장이 유고 시 부위원장이 자동으로 위원장 직무를 한다.

마) 선거업무에 필요한 사무요원을 2 인 이내로 들 수 있다.

3 항, 선관위 운영

가) 선관위는 독자적으로 운영 활동한다.

나) 재무담당은 선거관리운영에 관한 재정을 관리 기록한다.

다) 선관위 회의

1. 선관위 회의는 선관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된다.

2. 본 세칙에 명시하지 않는 의결은 출석인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확정한다.

3. 선관위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4. 선관위 회의를 기록한다.

4 항, 선관위 임기

가) 선관위 임명과 동시에 활동한다.

나) 선관위 위원의 임기는 선거결산일까지 그 권한이 주어진다.

5 항,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요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인의 당선을 이롭게 하거나 비난하는 어떠한 영향력 또는 인동도 할 수 없다.

6 항, 본회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관위를 교체할 수 있다.

제 5 조 선관위의 책임과 권한

1 항,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.

2 항, 선거실시 및 당선공고를 한다.

3 항, 입후보 등록 무효 및 유효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한다.

4 항, 당선자를 확정, 공표한다.

5 항, 선거무효 및 당선부호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.

6 항, 당선무표시 재선거 실시 공고를 한다.

7 항, 입후보자의 선거등록비를 관리한다.

8 항, 기타선거에 필요한 사항

제 6 조 선거공고 및 통지

1 항,

가) 선거공고와 같이 한다.

나) 선거통지 공문은 선거총회 45 일 이전까지 선거권자(대의원)에게 정기총회 소집, 통보와 같이 한다.

2 항, 선거공고 및 통지에는 선거관리위원장 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.

가) 선거일시 및 장소

나) 입후보 자격 및 추천인 자격

다) 입후보 등록서류 배부기간 일시 및 배부장소

라) 입후보 등록서류 접수기간 일시 및 접수처 장소

제 7 조 입후자의 자격

1 항, 미국에서 최근 만 3 년이상 거주한 한인이어야 한다.

2 항, 본회의 당연직 이사 및 대의원직을 2 년이상의 임기를 완수한 자로 한다.

3 항, 당연직 재임중 이사 및 대의원으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자

4 항, 덕망이 있고 장애인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

5 항, 한국 및 미합중국 또는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항에 해당되는 자는 본회 회장에 입후보 할 수 없다.

가) 어느 단체에서라도 징계를 1 년이상 받은 경력이 있는 자

- 나) 어느 단체에서라도 징계를 진행중도 완료 6 개월 전 인자
- 다) 범법행위로 인하여 \$5,000 불(미화)이상의 금고형과 6 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
- 라) 법원 판결에 의해 본회의 그 어느직책에서든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마) 반국가(한국 및 미국)적 단체에 관련하고 있는 자
- 바)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어 동포사회에 지탄을 받아 본회발전에 저해를 줄 수 있는 자
- 사) 역대 장애인체육회장을 비롯한 기타 한인기관단체장 선거에서 회장 입후보하여 범법행위가 적발되어 회장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선거관계로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
- 아) 지난 2 년동안 본회의 의무사항을 충실히 하지 않은 자
- 자) 본회 회칙 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

제 8 조 투표권 자격

- 1 항, 본부사무처는 제적대의원중에서 다음사항을 적용하여 선거권자를 확정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.
 - 가) 본회가 결정한 의무금(회비)를 납부하지 않은 단체는 선거권이 없다.
 - 나) 승인 또는 복권된 단체의 대의원은 만 6 개월(180 일)이후에 선거권이 주어진다.
 - 다) 위임장을 총회개최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단체 위임대의원은 선거권이 없다.
- 2 항, 확정된 회장후보자는 투표권이 없으며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.
- 3 항, 본회회장은 선거권이 없다.
- 4 항, 해당선거에서 선거운영세칙을 위반한(선관위결정) 대의원은 선거권이 박탈된다.
- 5 항, 만약 당선된 회장이 임기중 당선무효가 되었을 경우에는 재선거에 의한 회장선출시에 당사자의 선거권은 총회결정에 따른다.
- 6 항, 위임 대의원은 자신의 사전이 부착된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.
- 7 항, 선거관리위원장이 현직 대의원일 경우 투표권이 없으며 위임도 할 수 없다.

제 9 조 후보자 추천서 및 추천의 자격

1 항, 회장 입후자는 3 명의 대의원추천서를 제출한다. 4 명까지 받을 수 있고 그 이상 받았을 경우 타입후보자의 등록,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후보자격이 박탈되며 또한 추후확인시 회장 자격이 박탈된다.

2 항, 추천은 본회의 당연 직 대의원만 할 수 있다.

3 항, 추천인 1 인이 같은 직책을 이용하여 제 2 의 입후자를 추천할 수 없다.

4 항, 추천서는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는 양식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 추천서는 추천인의 성명을 필 하여야 하며 제 2 의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. Fax 또는 기타방법으로도 추천이 가능하다.

5 항, 제출한 서류 중 중복추천서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한다.

가) 중복추천서는 모두 무효 처리한다. 또한 선관위에서는 입후보자에게 즉시 통보한다.

나) 중복추천 당사자는 본 선거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대상이 된다.

다) 해당 입후자는 통보후 24 시간 이내에 추천서를 보충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등록서류 및 등록비

1 항, 회장

가) 등록서류

- | | |
|--|-----|
| 1) 회장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| 1 부 |
| 2) 대의원 추천서 | 3 부 |
| 3) 회장 입후보자 한글각서 | 1 부 |
| 4) 회장 입후보자 영문각서 | 1 부 |
| 5) 회장 입후보자 이력서 | 1 부 |
| 6) 투표참관인 명단 | 1 부 |
| 7) 회장 입후보자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사본 | 1 부 |
| 8) 회장 입후보자 사진(칼라 2"*2") | 2 매 |
| 9)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최근 3 년이상 거주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. | |

(거주증명은 전화고지서, 전기, 수도, 가스등 기타 고지서를 말한다.)

나) 보궐선거는 등록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다.

다) 현직회장이 연임하고자 할 때에는 연임신청서로 서류를 간소화 한다.

라) 입후보 등록비

1) 등록비 \$10,000(Cash or Cashier's Check or money order)

연임신청의 등록비도 \$10,000 불로 한다.

2) 보궐선거는 등록비를 \$10,000 불로 한다.

마) 등록된 서류는 총회에서 공개결정이 있을 시 선관위는 즉시 요구한 서류를
대의원에게 제출, 공개해야 한다.

제 11 조 입후보 등록비 규정

1 항, 본회 선관위에 입금된 입후보 등록비는 그에 대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환불이 안된다.

2 항, 등록비 선거업무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3 항, 입금된 등록비 관리는 본회은행구좌를 사용한다.

4 항,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거나 선관위 결정에 의하여 후보자격이 박탈되었을 때는 등록비 일체를 반환하지 않고 본회에 귀속된다.

제 12 조 선거운영비

1 항, 선거운영비는 후보자 등록비로 운영된다.

2 항, 본 선관위가 구성되는 즉시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한다.

3 항, 후보등록비는 선거해 당년도 선거업무에 관한 경비에만 지출함이 원칙이며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) 선거공고시 총회공고와 같이 할 때는 등록비로 지출한다.

나) 선거 및 당총회에 필요한 용품은 등록비에서 사용한다.

다) 총회 장소 및 식사비용, 그리고 초청비용은 등록비에서 지출한다.

라) 선관위 모임의 장소 및 식사비용은 등록비로 사용할 수 없다.

4 항, 반드시 사용근거의 영수증을 본부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.

5 항, 선거에 따른 비용은 등록비 한도 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.

6 항, 기타 선거에 관한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.

제 13 조 잔여등록비 인계

- 1 항, 등록비 잔액은 선거를 집행한 집행부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그 잔액은 신임집행부로 인계된다.
- 2 항, 지출한 금액이 후보등록비를 초과했을 시에는 신임회장이 책임을 지고 충당해야 한다.

제 14 조 입후보 서류 배부

- 1 항, 서류 배부는 Fax 또는 E-mail 등 기타방법으로 가능하다.
- 2 항, 회장 입후보 서류는 선거공문 발송과 동시에 배부를 시작하며 접수 마지막까지 배부한다.
- 3 항, 서류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다.
- 4 항, 서류 배부 장소는 본회사무처 또는 선관위 사무실에서 한다.
- 5 항, 서류배부처는 배부명단을 비치, 작성한다.
- 6 항, 서류배부시 본 선거운영세칙을 1 부씩 첨부한다.
- 7 항, 서류배부시 입후보 접수확인서를 배부하여 접수인은 서류수정인과 같이 확인한다.

제 15 조 입후보 등록접수

- 1 항, 등록 접수기간 및 시간은 다음 규정내에서 선관위에서 결정한다.
 - 가) 등록접수기간은 공고후 5 일 후부터 선거일 14 일 이전 중 연속 3 일 이상으로 한다.
 - 나) 접수시간은 접수처 지역시간 14 시부터 17 시까지로 한다.
- 2 항, 접수마감 시간전 사무실 입실을 기준으로 한다.
- 3 항, 접수처
 - 가) 입후보 등록접수는 본회 선관위로 한다.
 - 나) 명시한 시간에는 선관위 관계자가 항시 상주하여야 한다.
 - 다) 회장 입후보 등록은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한다.
 - 라) 접수처 출입문에 "재미대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"와 접수일시를 명시한다.

마) 접수확인증 1 부는 후보에게 교부하고 1 부는 선관위에서 보관한다.

4 항, 회장 입후보 등록접수

가) 회장 입후자는 규정한 제반서류와 등록비를 함께 선관위에 등록 접수시켜야만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접수를 불허한다.

나) 등록접수는 회장 입후보자 본인과 각서에 서약할 입회인 2 명이 직접 선관위에 출두하여 등록 접수하여야 한다. 그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.

다) 등록을 마친 입후보자가 선관위 결정에 의하여 후보자 자격을 못 받았을 때에는 등록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등록비 또한 반환하지 않고 신임집행부로 귀속된다.

제 16 조 후보자 확정 및 선거권자 확인

1 항, 선관위는 입후보 마감 후 24 시간 이내로 입후보자를 심의하여 회장후보자를 결정한다.

2 항, 선거권자는 본회 대의원 자격을 갖춘 자이며 본회 사무처에서 그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함으로써 그 자격이 확인된다.

3 항, 각 후보자는 현 직책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제 17 조 후보자 및 선거권자 공개

1 항, 확정된 회장 후보자를 즉시 공개한다.

2 항, 선거권자 명부를 공개한다.

3 항, 후보자 및 선거인 명부는 개별통지가 없으며 명단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배부한다.

제 18 조 후보자 기호결정

후보자 기호결정은 후보자 등록 접수 순서로 하며 기호는 1,2,3,4 순으로 한다.

제 19 조 후보자의 자격상실

1 항, 후보자가 사해할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되며 기권으로 처리한다.

2 항, 확정된 후보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선관위 결정에 의하여 후보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.

- 가) 후보자 또는 후보 측의 일원이 선거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했을 때
- 나) 후보자가 등록 시 제출한 제반서류에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
- 다) 선거집행부와 후보자 간에 결탁하여 금품을 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
- 라) 입후보 등록 전 입후보 간에 결탁하여 금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
- 마) 후보자간 결탁하여 금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
- 바) 후보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
- 사) 회장후보자가 4 인보다 많은 추천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

3 항, 후보자는 본회규정위반 및 기타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선관위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.

4 항, 후보자 자격박탈은 선관위 회의에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5 장,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 자는 징계대상이 된다.

제 20 조 선거운동

1 항, 선거운동의 기간은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2 항, 후보는 특표의 확보를 위하여 선거공약 및 정책 등을 홍보할 수 있다.

3 항, 건전한 선거풍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.

- 가) 상대후보 비난, 비방 또는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
- 나) 금전수수나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
- 다) 음식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
- 라) 선거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행위

4 항, 각 후보자는 투표전 본인과 1 명의 추천인이 소견을 각자 5 분이내로 발표할 수 있다.

제 21 조 감표위원

1 항, 당 총회에서 2 명의 감표위원을 선출한다.

2 항, 감표위원의 직무는 투표준비물과 개표과정의 공정성을 감시한다.

3 항, 감표위원은 투표후 이상이 있을시 투표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22 조 투표참관인

1 항, 각 회장후보의 참관인은 2 명까지 할 수 있다.

2 항, 참관인은 선거과정 중 의문이 있을 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본인이 직접적인 행동을 하여서는안된다.

제 23 조 선거장 질서(경비)요원

1 항, 선관위 결정에 의하여 유급경비원을 총회장소에 배치할 수 있다.

2 항, 의장 및 선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장 질서유지와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.

3 항, 투표 및 개표시 투표함을 경비하며 투표장 안전을 유지한다.

제 24 조 선거장소

1 항, 대의원 총회장소에서 선거를 집행한다.

2 항, 장소를 변경 할 경우 선관위 과반수 이상의 의결에 의해 같은 건물 내에서만 가능하다.

제 25 조 선거준비

1 항, 투표용지

가) 투표용지는 흰색을 원칙으로 하고 기표의 표시는 찬성에 "O"표시로 한다.

나) 투표용지는 양식에 후보의 순서는 번호순으로 한다.

다) 투표용지 양식은 본회양식을 원칙으로 한다.

라) 감표위원은 투표용지 1 개당 확인 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.

마)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색깔 및 양식을 변경할 수 있다.

2 항, 투표함

가) 투표함의 규격은 평판 12"*12" 높이 16" 무게 1/4" 로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한다.

나) 상단은 개폐가 가능하며 뚜껑으로 설치하며 투표 전 사명을 봉인한다.

다) 투표함 설치는 바닥에서 24"~26" 높이로 하고 사방에서 보일 수 있게 단상 중앙에 설치하고 반경 10ft 이상으로 투표자 이외는 접근을 금지시킨다.

라)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투표함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3 항, 기표소

가) 기표소내에서는 기표할 수 있는 책상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기표하는 것이 보이지 않게 설치한다.

나) 기표소내에는 잉크 또는 인주 그리고 직인 할 수 있는 원통을 배치한다.

제 26 조 선거실시

1 항, 투표(당연직 대의원)

가)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한다.

나) 투표는 1 인 1 표로 한다.

다) 투표는 반드시 기표소안에서 기표하여야 한다.

라) 투표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였을 때에는 1 회에 한하여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. 단, 잘못된 투표용지는 재교부와 동시에 파기한다.

마) 선거권자는 투표용지에 표기가 완료되면 반드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.

2 항, 개표

가) 개표는 공개적으로 투표종료 직후에 실시한다.

나) 개표는 선관위원이 직접 한다.

다) 선관위 관계자 이외에는 10ft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.

제 27 조 유효표 및 무효표

1 항, 개표시 유효표는 총상관례를 따르며 다음과 같이 무효 및 유효표를 판별한다.

가)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한다.

1. 선관위에서 배부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
2. 선관위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투표용지
3. 감포위원의 날인포 서명이 없는 투표용지
4. 어느 난에도 "O"표를 하지 아니한 것
5. "O"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
6. 후보의 기표난에 2 곳 이상 표기된 것
7. 기표난의 선 밖에 기표한 것
8. ½씩 기표한 것
9. 투표용지 ¼ 이상

나)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유효표로 처리한다.

1. 정상적으로 기표난에 표시한 투표는 해당후보의 득표로 한다.
2. 후보간 표시된 선에서 2/3 이상 기표 된 후보 쪽의 득표로 인정한다.
3. 기표 난 상,하 선상에 표기한 것은 그 후보자의 간주하며 유효하다.

2 항, 유효표 및 무효표 결정여부는 후보와 감표위원의 입회 하에 확인하며
선관위원장이 판정 조치한다.

제 28 조 투표에 의한 당선확정

1 항, 회장당선은 대의원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 득표를 하여야 당선된다.

2 항, 1 차 개표결과 그 누구도 과반수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과
같이한다.

가) 상위득표 두 후보자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.

나) 재투표 개표결과 그 누구도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 득표를 못하였을
때에는 3 번째 투표를 실시한다.

다) 3 차 투표전에 총회를 재개하여 투표결과에 따른 회장당선 확정방법을 결정한다.

제 29 조 회장후보가 단독후보일 경우

1 항, 회장은 당총회에서 무기명 표결로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여야
당선이 확정된다.

2 항, 1 차 표결에서 찬성득표가 과반수에 미달될 때에는 1 번에 한하여 재표결을 할 수
있으며 1 시간 이내에 실시한다.

3 항, 재표결에서도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회장후보는
낙석 되며 본 선거운영세칙 제 31 조에 의해 조치한다.

제 30 조 현회장이 연임하고자 할 때

1 항, 총회에서 무기명표결로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이 찬성을 하여야 연임이 확정된다.

2 항, 1 차 투표결과 연임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본 선거세칙 제 31 조에 의해 조치된다.

3 항, 현 회장 외에 회장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본 운영세칙 제 28 조를 이행한다.

제 31 조 후보자가 없거나 낙선되었을 때

1 항, 회장 단독후보가 낙선되거나 연임이 부결되었을 때 또는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다음의 (가)와 (나)항 중 한가지를 결정하여 시행한다.

가) 재선거실시(선관위)

1. 현 집행부는 30 일 이내로 회장선출을 다시하여야 한다.
2. 재선거는 본 선거운영세칙에 준하여 실시하되 총회 결정에 의거 간소화 될 수 있다.
3. 재선거를 위한 총회의 제반사항은 당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.
4. 재선거가 결정되면 선관위를 재구성할 수 있다.
5. 회장후보 낙선자가 재선거에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재등록비 \$10,000 만 납부하면 되며 신규 후보등록자 등록비는 \$20,000 을 납부하면 된다.

나) 표결에 의한 선출(총회)

1. 총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여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회장이 선출된다.
2. 선관위 임무는 종결된다. 또한, 표결은 본 세칙 제 29 조 규정에 따른다.
3. 본 세칙 제 10 조(등록서류 및 등록비)를 7 일 이내에 완결해야 한다. 본회의 재무문과위원회에서 선거에 관한 모든 경비를 지출한다.

제 32 조 당선선포 및 당선공고

- 1 항,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즉시 당선선포를 한다.
- 2 항,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한국신문에 공고한다.

제 33 조 당선무효

1 항, 당선된 회장과 감사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.

- 가) 당선자가 입후보 등록 시 제출한 서류에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
- 나) 선거관리위원회와 당선자 간에 결탁하여 금품을 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
- 다) 당선 전 타 후보와 결탁하여 금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
- 라) 당선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
- 마) 대리투표 및 무더기(집단) 투표 등의 방법으로 당선되었을 때

2 항, 당선자가 경선 또 단독이든 간에 관계없이 본 선거운영세칙 제 19 조 2 항 제 20 조 3 항에 해당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당선이 무효 될 수 있다.

3 항, 회장취임전 당선무효는 선관위의 당선무효결정과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확정된다.

4 항, 당선무효로 당선자격이 박탈된 자는 징계대상이 된다.

제 34 조 회장당선 무효에 따른 긴급조치

1 항, 당선자가 회장취임전 당선무효가 되었을 때

- 가) 해당 회장선거를 집행한 회장이 60 일 이내로 회장선출을 다시 하여야 한다.
- 나) 본 선거세칙에 준하여 선거를 실시한다.
- 다)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는 선관위에 임명할 수 없다.
- 라) 대의원 총회의 결정에 의해 선관위를 재구성할 수 있다.
- 마) 현 집행부는 신임집행부에게 업무인계때까지 업무를 집행한다.

2 항, 재임중 당선무효가 되었을 때

- 가) 총회에서 출석대의원의 2/3 이상이 당선무효를 찬성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총회의 성립과 의결이 결정된다.
- 나) 본 선거운영세칙에 따라 선거를 실시한다.
- 다)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차기집행부 구성때까지 업무를 계속한다.

제 35 조 회장당선 무효에 따른 긴급조치

1 항, 회장당선자가 업무개시전 당선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총회를 재개할 수 있으며 총회결정을 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- 가) 현 집행부는 30 일 이내로 회장선출을 다시 하여야 한다.
- 나) 본 선거세칙에 준하여 선거를 실시한다.
- 다) 부정행위에 관련된 자는 선관위에 임명될 수 없다.
- 라) 대의원 총회의 결정에 의해 선관위를 재구성 할 수 있다.
- 마) 현 집행부는 신임집행부에게 업무인계 때 까지 업무를 집행한다.

2 항, 재임중 당선무효 확정 및 조치

- 가) 당선무효 확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.
 1. 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.
 2. 대의원 총회에서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무효가 결정된다.

나) 총회에서 당선무효가 결정되면 총회결정을 우선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1. 본회정관 제()장 ()로(보선 및 직무대항)와 같이 조치된다.
2.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직책은 보장되며 업무를 계속 하여야 한다.

다) 보궐선거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본 선거운영세칙에 따라 선거를 실시한다.

3 항, 회장당선 무효가 되었어도 낙선자는 부활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환원하지 않는다.

제 36 조 재출마 불가

1 항, 다음에 명시된 조항에 해당되는 자는 회장선거에 재출마할 수 없다.

가) 본 선거운영세칙을 고의적으로 위배하여 징계를 받은 자

나) 역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있는 자

제 37 조 부칙

1 항, 본회 회장당선자는 본회 및 본회 산하단체에서 그 어느 직책이든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. 회장 당선확정 14 일 후에는 모든 직책에서 자동으로 직위해제 된다.

2 항, 본 선거운동 세칙은 보다 효율적이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하여 개정 및 수정 할 수 있다.

3 항, 선거운영세칙의 불분명한 사례는 해당년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.

4 항,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업무 기간 중 선관위의 변동사항 또는 결정 및 진척사항을 본부사무처에 통보한다.

제 38 조 선거운영세칙의 효력발생

본 선거운영세칙은 재미대한장애인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.